

●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18-4호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 개정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동해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순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 구분	고 시 수 역
1	옥계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무역항	주수천 하구의 북방과제 서단에서 진방위 65도 연장선상 2,550미터 지점,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8분 10.09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 용바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6분 58.10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2	목호항	강원도 동해시 목호진동	무역항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 33분 22.13초, 동경 129도 07분 16.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350미터 지점과, 북위 37도 32분 10.13초, 동경 129도 06분 53.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면
3	동해항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무역항	동해시 냉천 동단에서 북위 37도 31분 10.14초, 동경 129도 10분 21.73초와 북위 37도 28분 54.16초, 동경 129도 10분 21.73초 및 동해항 남쪽 호안 끝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4	삼척항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무역항	북위 37도 26분 02.18초, 동경 129도 11분 25.73초 지점에서 삼척시 오분동 고성산 산정 97미터, 북위 37도 25분 50.18초, 동경 129도 12분 06.73초 지점, 북위 37도 26분 15.18초, 동경 129도 12분 06.72초 지점 및 북위 37도 26분 29.18초, 동경 129도 11분 33.73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5	호산항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동	무역항	비화진 돌출부(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129도 20분 51.36초)로부터 정동으로 2,600m 지점(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129도 22분 36.00초)과 고포츄 돌출부(북위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1분 52.20초)로부터 정동으로 3,000m 지점(북위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3분 55.20초)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6	사천진항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국가어항	사천항 북방과제 끝단(확장공사완공기준)과 남방과제(내측방사제) 끝단 및 외측방사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7	강릉항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국가어항	강릉항 북방과제 끝단과 남방과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8	궁촌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국가어항	궁촌항 북방과제 끝단과 남방과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9	장호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국가어항	장호항 북방과제 끝단과 남방과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0	임원항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국가 어항	임원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1	대진항	강원도 동해시 대진동	지방 어항	대진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2. 적용제외 : 위 구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0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동해해양경찰서 고시 2017-01호는 폐지한다.

※ 도면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법**원****서울고등법원****제3형사부****결 정**

사 건 2018코44 형사보상

청 구 인 김황식 (500806-*****), 정치인

주 거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0, 111동 1404호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등록기준지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286

대 리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강배, 이인창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6노61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4,400,000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4,955,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하남시장인 청구인이 박진식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5,600만 원을 수수한 후 특정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이하 ‘1차계획’이라 한다)을 고시하게 하거나 1차계획을 취소하고 변경된 배치계획(이하 ‘2차계획’이라 한다)을 재차 고시하도록 하고, 결국 특정사업자를 가스충전소 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내용의 수뢰후 부정처사죄 및 직권남용죄로 구속되어 기소되었다.

나. 수원지방법원은 2016. 2. 5. 위 공소사실 중 청구인이 1,100만 원 및 박진식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불상액의 이익을 뇌물로 수수한 후 1차계획을 취소하고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2차계획을